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12월 3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3일

나. 제출자: 송순효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12.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송순효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본 조례의 제정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
(안 제1조~제3조)

○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환경교육: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
- 학교환경교육: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2조제2호¹⁾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·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
- 사회환경교육: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

○ 책무 (안 제3조)

- 구청장의 책무: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·시행 및 관련 민간 활동 지원
- 사업자의 책무: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
- 구민의 책무: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참여·협력

2)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
○ 수립주기: 5년 (강행규정)

○ 계획내용

-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
-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-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

1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각 개별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·광주과학기술원·대구경북과학기술원·울산과학기술원

- 구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
-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※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
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
3) 위원회 지문 (안 제5조) : 강서구 환경보전지문위원회의 지문을 구할 수 있음

4)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(안 제6조 ~ 제10조)

○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- 지원대상: 유치원, 학교(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)에서의 환경
교육,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체험 및 현장교육
활성화, 학교 환경 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

○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

○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○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(안 제9조)

- 안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안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
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
○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

5) 시행규칙 관련 규정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4조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」 제10조, 제26조

나. 예산조치: 2021년 본예산 편성 예정

다. 해당부서: 녹색환경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11. 6. ~ 11. 11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서선옥)

- 본 조례안은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 정의에서 “환경교육”, “학교환경교육”, “사회환경교육”에 대해 정의하였고
 -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 -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되,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」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도록 하였음
 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환경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, 범위, 추진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고
 - 안 제9조에서는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르면,

- 제4조 책무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”
- 제10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”
- 제11조 제4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.”
- 제13조 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”
-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“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과 지원을 권장하고 있음.

○ 이에 강서구에서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,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²⁾하고 있으며,

2) 환경보전시범학교 7개교(초4, 중3), 교육 27회 495명 실시,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95점 공모, 환경일기장 1,300부 제작 10개 초등학교 배부 <2020.10월 말 현재>

- 서울시 역시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(2009. 7. 30. 제정)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 있음.

※ 2020년 서울시 지역환경센터 지정현황

연번	자치구	단체·기관명	대표자	소재지	운영주체	조례제정
1	도봉구	도봉환경교육센터	이대형	도봉구 시루봉로 6길 33	도봉구(민간위탁)	○
2	마포구	(사)자연의벗연구소	이시재	마포구 월드컵로3길 36	비영리법인/단체	×
3	서초구	(사)에코맘코리아	하지원	서초구 바우뒀로27길 7-35	비영리법인/단체	○
4	영등포구	시립문래청소년센터	조미란	영등포구 문래로 110	서울시(민간위탁)	×
5	종로구	(사)녹색교육센터	박영신	종로구 혜화로 13	비영리법인/단체	×

- 타 구에서는 현재 6개구³⁾에서 환경교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○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- 상위법령에서 권장 및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,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3) 서초, 도봉(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), 동대문, 강동, 성북, 은평

□ 「환경교육진흥법」

제4조(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제10조(사회환경교육의 진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1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)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(경비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」

제26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① 구는 교육기관,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

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환경교육·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 5. 18)

② 구는 구민,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29조(기능)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
2.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